

##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24. 0시 ~ 2021. 1. 3.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 시설·장소의 이용자<br>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12월 30일부터 시행)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 시설                  | 현황   | 방역강화 내용  | 비고 |
|---------------------|--|--|----|
| 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343개소) | ▶요양시설(228개소)<br>▶요양병원(80개소)<br>▶정신의료기관(35개소)   |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
| 종교시설 (5,198개소)      | ▶개신교(4,126개소)<br>▶불교(604개소)<br>▶천주교(121개소)<br>▶원불교(135개소)<br>▶기타(212개소)  |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
| 식당                  | ▶음식점(31,607개소)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
| 파티룸                 |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집합금지<br>*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
| 영화관                 | ▶(27개소)  |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    |
| 공연장                 | ▶(56개소)  | - 좌석 두칸 띄우기  |    |
|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 ▶스키장(1개소)<br>▶눈썰매장(7개소)<br>▶빙상장(1개소)   | - 집합금지   |    |
| 숙박시설 (2,983개소)      |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 <small>농어촌정비법</small><br>▶숙박시설(53개소) <small>관광진흥법</small><br>▶숙박업소(1,530개소) <small>공중위생법</small> |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    |
| 관광명소 (212개소)        | ▶관광명소(188개소)   | - 최대한 폐쇄   |    |
|                     | ▶국·도·군립공원(10개소) 등  | - 최대한 폐쇄   |    |
| 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 ▶백화점(1개소)<br>▶대형마트(14개소)   |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건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    |

## 붙임 (중앙사고수습본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설별 방역지침)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4.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7.) 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전국

## 2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b>비대면 실시</b></li> <li>*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li> <li>■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출입자 명부 관리</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li> <li>■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b>비대면 실시</b></li> <li>*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li> <li>■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li> <li>*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li> <li>■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li>■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7.) 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전국

## 2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구분 | 대 상  |
|----|--|
| 식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료*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ul></li></ul></li><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ul> |

##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1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li> </ul> </li> <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 <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li> <li>*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li> </ul> </li>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li> </ul> </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ul> </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ul> </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li> </ul> </li>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ul> </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ul> <p>&lt;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ul> |

|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li>▶ <u>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u></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li> </ul> <p><b>&lt;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p><b>&lt;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li> <li>-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하도록 권고</li> <li>▶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ul> |

## 참고2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관련 FAQ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m<sup>2</sup>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br>(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 ① 적용 지역

- 전국

## ② 적용 대상

- (대상)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전국 영화관 ·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7.) 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전국

## 2 적용 대상

- (대상) 영화관, 공연장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영화관, 공연장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영화관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공연장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ul> </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li> </ul> </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7)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조치 중 백화점·대형마트 관련은 본 조치로 대체함

## ① 적용 지역

- 전국

## ② 적용 대상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대형마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수도권>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r/>*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li> <li>▶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li> <li>▶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비수도권>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li> <li>▶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186(2020.12.9.)에 따른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전국

## 2 적용 대상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① 적용 지역

- 전국

## ②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li> </ul> </li> <li>▶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li> </ul> </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li> </ul>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 연번 | 조치분야            |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1  | 전국 방역강화 특별대책 지침 |                     | 보건복지부<br>(생활방역팀)    | 044-202-1721~9                |  |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 사회재난과<br>(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br>주무관 유병재<br>주무관 최성철 | 063-280-3823<br>063-280-3822<br>063-280-3796 |
| 3  | 요양시설            |                     | 노인복지과<br>(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김기욱                       | 063-280-2461                                 |
|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                     | 보건의료과<br>(감염병대응팀)   | 주무관 성 현                       | 063-280-2431                                 |
| 4  | 종교시설            |                     | 문화유산과<br>(종무팀)      | 주무관 정경화                       | 063-280-4744                                 |
| 5  | 식당              |                     | 건강안전과<br>(식의약안전팀)   | 주무관 김영옥<br>주무관 안경주            | 063-280-2456<br>063-280-2440                 |
| 6  | 영화관             |                     | 문화예술과<br>(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박준영<br>주무관 이현주            | 063-280-3432<br>063-280-3386                 |
| 7  | 공연장             |                     | 문화예술과<br>(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최효진                       | 063-280-3387                                 |
| 8  | 겨울 스포츠 시설       |                     | 체육정책과<br>(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용일<br>주무관 안채영            | 063-280-2541<br>063-280-2543                 |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br>(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br>(생생마을팀)    | 주무관 김영옥                       | 063-280-4295                                 |
|    |                 | 숙박시설<br>(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br>(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김민경                       | 063-280-2704                                 |
|    |                 | 숙박업소<br>(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안전과<br>(위생관리팀)    | 주무관 이란주                       | 063-280-4673                                 |
| 10 | 관광명소            | 관광지                 | 관광총괄과<br>(토탈관광팀)    | 주무관 유재준                       | 063-280-4742                                 |
|    |                 | 국·도·군립공원            | 자연생태과<br>(자연환경팀)    | 주무관 하은진                       | 063-280-4173                                 |
| 11 | 백화점·대형마트        |                     | 일자리경제정책관<br>(소상공인팀) | 주무관 김다정                       | 063-280-3213                                 |